



2025년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인천연계* 공고

※ 인천연계 공고란?

관내 기업의 사업지원 확대를 위하여 '인천연계 공고'로 사업신청 시, 선정평가 간 '가점' 부여 대상지역 외 소재기업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고로 사업 신청이 가능함

1. 사업목적 중소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통한 IP분쟁 해결역량 및 수출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해외 특허분쟁(위험) 또는 수출(예정)이 있는 인천소재 중소기업

*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3. 지원내용 지식재산권(IP) 분쟁방어/권리행사/분쟁대응/권리보호 전략 컨설팅 제공

▶ **특허분쟁 대응전략**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분쟁 방어	특허침해분석	분쟁위험특허 조사 및 자사제품의 특허 침해여부 분석	20백만원
	사전대비 전략(A, B, C)	특허침해 분석, 특허분쟁위험 대응	35백만원
	특허보증(A, B)	특허침해 보증 대응, 공급 제품에 대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50~100백만원
	경고장 대응 전략	특허침해 경고장이나 라이선스 요구를 받은 경우 대응 및 협상전략	50백만원
	소송 방어 전략	특허 소송 대응전략	100백만원
	라이선스 협상 전략	라이선스 갱신시 대응전략	50백만원
권리 행사	특허피침해분석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상제품의 피침해분석	25백만원
	특허권 행사	자사 특허에 대한 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권리행사(경고장, 소송 등) 전략	100백만원
	특허권 보호	자사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무효 및 취소심판 대응전략	47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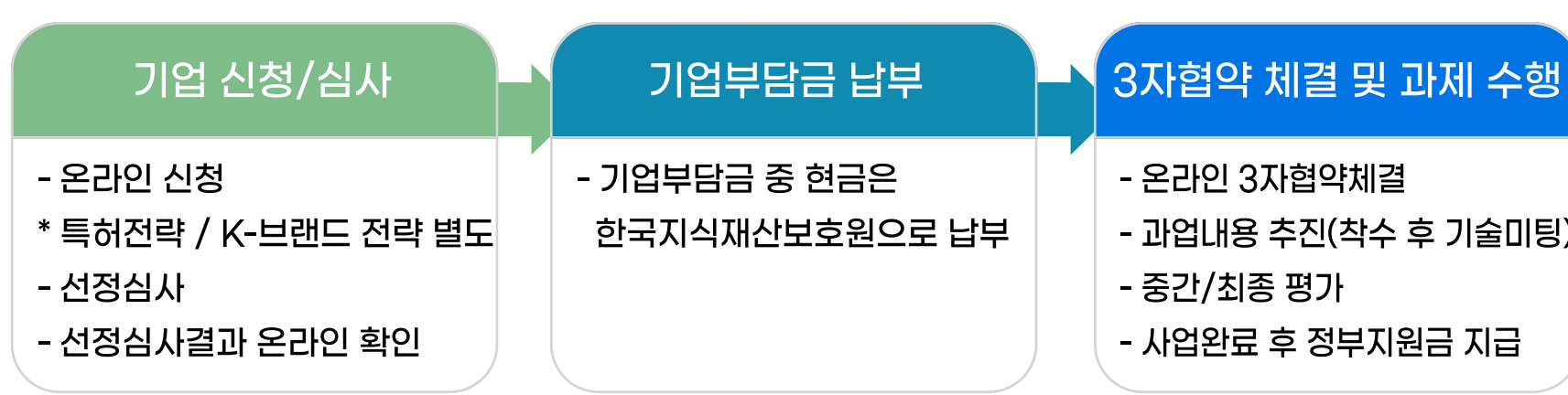
▶ **K-브랜드(상표·디자인)분쟁 대응전략**

구분	유형	지원내용	총사업비(최대)
분쟁 대응	상표무단선점대응 (Fast Track)	상표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권리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40백만원
		상표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도메인이름 무단선점 대응전략	
권리 보호	위조/형태모방대응	위조상품 및 모방 콘텐츠 등 상표, 디자인 도용 이슈에 대한 대응전략	40백만원
		위조/형태모방 대응 이후, 상대방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권리 보호	일반제조 분야 IP 보호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보호 전략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콘텐츠 분야 IP 보호	콘텐츠 IP 포트폴리오 분석, 계약 전략 지원 등 중장기 콘텐츠 지재권 보호 전략	40백만원
		해외 진출 기업의 해외 현지에서의 상표 등 권리 보호 전략	12백만원
		권리화 과정에서의 경쟁사 등에 의한 이의신청 대응전략	

4.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70% 지원

구분	정부지원 비율 (총사업비 중)	수혜자 부담 비율	
		현금	현물
소기업	70%	10% 이상	20% 이하
중기업		20% 이상	10% 이하

5. 지원절차



6. 신청기간

- ▶ 정기공고
 - (1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25. 3. 4. ~ 3. 24., 18:00
 - (1차)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 '25. 3. 4. ~ 3. 21., 18:00
- ▶ 수시공고
 -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 : 연중(공고일 ~ 연말)
 -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 : (1-1차) '25. 3. 4. ~ 3. 13. (1-2차) '25. 3. 14. ~ 3. 27.

7. 신청방법

'IPDRMS(사업 신청 사이트)' 접속 후 온라인 신청 및 제출 (<https://www.ip-navi.or.kr/ipdrms>)

- ※ 사업 신청사이트 내 **인천연계 공고**와 **보호원 공고** 별도 접수
- [인천연계 공고] 인천소재 중소기업 대상, 선정심사 시 가점 운영
- [보호원 공고] 전국 중소/중견기업 등 대상
- ※ 세부 내용 첨부 공고문 및 붙임파일 확인

사업신청 바로가기

문의 : 인천지식재산센터 032-810-2876 / ljik@incham.net

공고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필수

※ 기업 및 수행기관 유의사항 정부지원금이나 기업부담금 관련하여, 신청기업과 수행기관간 상당한 거래가 있을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등 제재를 취할 수 있음